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보험급여팀장 고영옥(6572) / 팀원 임은애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850호

시행일자 2023. 9. 20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
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

참 조

제 목 임신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636호 (2023. 9. 18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임신공휴일로 지정된 2023. 10. 2(월)에 대해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됨을 알려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,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

#붙임: 보건복지부 공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